

정 관

- . 1997년 4월 30일 정관제정
- . 1997년 9월 18일 정관승인
- . 1999년 7월 29일 정관변경
- . 2002년 3월 11일 정관변경
- . 2004년 2월 24일 정관변경
- . 2005년 4월 02일 정관변경
- . 2006년 3월 31일 정관변경
- . 2007년 12월 6일 정관변경
- . 2009년 1월 14일 정관변경
- . 2010년 3월 26일 정관변경
- . 2013년 3월 12일 정관변경
- . 2015년 2월 27일 정관변경
- . 2016년 2월 22일 정관변경
- . 2017년 4월 11일 정관변경
- . 2018년 2월 21일 정관변경
- . 2020년 7월 20일 정관변경
- . 2021년 8월 17일 정관변경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Dae Jeon Association for the Disables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연합회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계를 대표하고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국민의 일원으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제약이 되는 모든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4. 11. 개정)

제2조 (명칭) ①연합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2006. 3. 31. 개정)

②연합회의 영문표기는 Dae Jeon Association for the Disables로하고 약칭은 D.J.A.D. 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246 705호(대흥동, 대림빌딩)에 두며, 각 구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2005. 4. 2. 개정, 2021. 8. 17. 개정)

제4조 (사업) 연합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실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2. 장애인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편견과 차별철폐운동
3. 장애인의 제반 인권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4. 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법제도의 개선 건의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 및 유관기관·단체의 활동에 대한 상호협력
6. 국내·외 장애인 단체간 상호 업무협약, 조정 및 협력교류 지원사업
7.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계몽, 홍보, 출판, 문화사업
8. 장애인의 교육, 장학, 취업, 재활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
9. 삭제(2013. 3. 12. 삭제)
10. 장애인 체육시설, 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의 수탁운영
11.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2013. 3. 12. 개정)
12. 각 호의 사업들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 활동 및 연구소 운영(2013. 3. 12. 개정)
13.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반되는 일체의 사업(2013. 3. 12. 신설)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자산구분) ①연합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006. 3. 31. 개정)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타 목적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나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제잉여금 중 적립금 (2006. 3. 31. 개정)

③주무관청이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자산의 관리 및 처분) ①기본재산의 취득, 교환, 임대 또는 의무의 부담 등 관리에는 이사회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삭제

③연합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 양도, 증여 기타 권리의 포기 등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는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 (경비 및 유지방법) ①연합회의 운영비는 임원 또는 회원단체의 회비, 독지가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정부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009. 1. 14. 개정)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①연합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연합회의 회계는 회장이 집행한다. 단 사업계획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9조 (회계처리) 연합회의 회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2. 3. 11. 개정)

제10조 (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연합회의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2006. 3. 31. 개정)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연합회의 매 회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2006. 3. 31. 개정)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연합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금관리규정에 의해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2004. 2. 24. 개정)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①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차입을 행할 경우에는 회장단회의 의결로 진행하고 이사회 추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 또는 장·단기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상환한다.(2017. 4. 11. 개정)

제3장 회 원

제15조 (회원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연합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중앙부처에서 허가한 법인단체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허가한 장애인 법인단체로 소정의 입회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5. 4. 2. 개정, 2015. 2. 27. 개정)

2.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하되 연합회의 목적과 취지를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는 단체로 한다.(2015. 2. 27. 개정, 2018. 2. 21. 개정)

3. 후원회 회원은 연합회의 목적사업을 후원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 단체로 한다.

4. 삭제(2015. 2. 27. 개정)

5. 삭제 (2006. 3. 31. 개정)

제16조 (회원의 권리) ①연합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동등한 의결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004. 2. 24. 개정, 2021. 8. 17. 개정)

②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연합회가 행하는 각종행사 및 교육, 연구 및 제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2004. 2. 24. 개정, 2015. 2. 27. 개정, 2021. 8.

17. 개정)

제17조 (회원의 의무) ①연합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분담금 납부의무와 연합회의 정관, 제규정에 규정된 사항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016. 2. 22. 개정, 2018. 2. 21. 개정)

②삭제

③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회원의 징계 및 탈퇴) ①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연합회의 목적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②회원은 탈퇴하려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탈퇴원을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2004. 2. 24. 개정)

③자진 탈퇴하거나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단체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05. 4. 2. 개정, 2006. 3. 31. 개정)

④기타사항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4장 임 원

제1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연합회는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2명) (2004. 2. 24. 개정, 2006. 3. 31. 개정, 2007. 12. 6. 개정, 2017. 4. 11. 개정)

3. 삭제 (2006. 3. 31. 개정)

4. 이사 4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2007. 12. 6. 개정, 2017. 4. 11. 개정)

5. 감사 2인

② 삭제

제20조 (임원의 자격) 연합회의 임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항을 충족하여야 한다.(2006. 3. 31. 개정, 2010. 3. 26. 개정)

①연합회의 이사는 정회원 및 준회원 단체로 등록된 단체장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연합회장은 장애인으로 하되 정신적(지적, 정신, 자폐성장애)장애인단체장 및 장애인부모단체장은 예외로 한다.(2010. 3. 26. 개정, 2013. 3. 12. 개정, 2015. 2. 27. 개정, 2021. 8. 17. 개정)

②삭제

③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2010. 3. 26. 개정)

④연합회의 회장 입후보자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연합회에 가입한 정회원 및 준회원 단체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하며, 대전광역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 한다.(2010. 3. 26. 개정, 2015. 2. 27. 개정, 2021. 8. 17. 개정)

제21조 (임원의 선임) 연합회의 임원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2002. 3. 11. 개정, 2004. 2. 24. 개정, 2005. 4. 2. 개정, 2007. 12. 6. 개정)

2. 정회원단체장 제20조 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정회원단체는 다른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2007. 12. 6. 개정, 2010. 3. 26. 개정)

3. 삭제.(2007. 12. 6. 개정, 2010. 3. 26. 개정)

4. 연합회의 회장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15일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2007. 12. 6. 개정)

제22조 (임원의 임기 등) ①연합회의 회장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하며,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2. 3. 11. 개정, 2006. 3. 31. 개정, 2007. 12. 6. 개정, 2015. 2. 27. 개정, 2021. 8. 17. 개정)

②정회원단체장이 소속단체에서 사임 및 임기가 종료될 경우 이사직이 소멸되며, 새로 선임된 소속단체장이 이사직을 승계하게 한다. 단, 연합회장은 소속단체의 임기종료에 관계없이 연합회장 본래의 임기를 보장한다.(2005. 4. 2. 개정, 2010. 3. 26. 개정)

③회장 및 임원이 궐위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2004. 3. 24. 개정, 2007. 12. 6. 개정, 2015. 2. 27. 개정)

1. 회장은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감사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원단체의 회장선임 관련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보선 및 선임시 잔여임기가 6월 이상일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6월 미만일 경우는차기 임원으로 인정한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삭제(2006. 3. 31. 개정)

③삭제

④삭제

⑤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07. 12. 6. 개정)

⑥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연합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 (회장단회의) ①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할 수 있다.(2004. 2. 24. 명칭 개정, 2006. 3. 31. 개정, 2010. 3. 26. 개정)

②회장단 회의는 이사회 위임사항을 처리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4. 2. 24. 개정).

③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2010. 3. 26. 개정)

제25조 (대표권의 제한) 연합회의 회장 이외는 연합회를 대표하지 않는다.

제26조 (임원의 대우) 연합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원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겸직금지) ①이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연합회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8조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연합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명예회장,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2004. 2. 24. 개정)

②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2004. 2. 24. 개정)(2010. 3. 26. 개정)

③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합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04. 2. 24. 개정)

제29조 (전문위원회 및 산하기구) ①연합회는 장애인 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및 복지관의 수탁운영, 문화지원, 재활교육 등 분야별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산하기구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2004. 2. 24. 개정, 2010. 3. 26. 개정)

②회장은 전문기구 및 산하기구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2010. 2. 24. 신설)

③회장은 전문기구(장) 및 산하기구(장)의 업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20. 2. 24. 신설)

제5장 총회

제30조 (총회구성) ①연합회의 총회는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 정회원 단체는 각 3명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단 준회원 단체는 단체장에 한하여 당연직 대의원 1인으로 한다.)(2006. 3. 31. 개정, 2021. 8. 17. 개정)

②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2007. 12. 6. 개정)

제3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04. 2. 24. 개정)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당연직 이사는 총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본다)(2017. 4. 11. 개정)
3.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보고 및 결산의결에 관한 사항(2005. 4. 2. 개정, 2006. 3. 31. 개정)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제32조 (총회와 소집 등)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이러한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2010. 3. 26. 개정, 2015. 2. 27. 개정)

③긴급한 의안은 이사회 의결로 집행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④대의원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제42조와 동일하다. 단, 연합회장을 선출 할 때에는 대리 할 수 없다.(2004. 2. 24. 신설, 2010. 3. 26 개정)

제34조 (총회 회의록) ①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참석한 회원 중 약간 명을 호명하여 기명날인 하도록 할 수 있다.(2004. 2. 24. 개정, 2017. 4. 11. 개정)

③총회 의사록은 연합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35조 (이사회 구성) ①연합회의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2006. 3. 31. 개정, 2007. 12. 6. 개정)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제36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2005. 4. 2. 개정, 2006. 3. 31. 개정)

3.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정관이나 법령에 의한 이사회 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장이 부의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확정(2006. 3. 31. 개정)
9.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2006. 3. 31. 개정)

제37조 (이사회 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2002. 3. 11. 개정, 2004. 2. 24. 개정)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삭제

제38조 (이사회 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이러한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2010. 3. 26. 개정, 2015. 2. 27. 개정)

제39조 (의결 제적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징계 및 선임·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40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회장이 참석이사 중 약간명을 호명하여 기명날인 하도록 한다.(2004. 2. 24. 개정, 2017. 4. 11. 개정)

③의장은 의사록을 연합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2006. 3. 31. 개정)

제41조 (서면결의 등)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4. 2. 24. 개정)

제4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임원이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단체의 이사 및 임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04. 2. 24. 개정, 2010. 3. 26. 개정, 2013. 3. 12. 개정, 2020. 7. 20. 단서 신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 1항, 2항, 3항은 대의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장 수익사업

제43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연합회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사업

3. 건강카페운영사업(각종 식,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음료품 및 관련제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음식점업, 식품제조업)(2013. 3. 12. 개정)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수익사업이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각종 수익사업 (2013. 3. 12. 신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44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 얻어지는 순이익은 연합회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004. 2. 24. 개정)

제8장 후원회

제45조 (후원회 구성) 연합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6조 (후원회의 자격) 후원회는 연합회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회원 및 후원회비, 찬조금을 내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47조 (후원회 운영 등) 후원회의 가입 및 탈퇴, 권리 및 의무,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48조 (사무처) ①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삭제 (2006. 3. 31. 개정)

제48조 1(사무총장) 회장은 별정직, 명예직으로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6.2.22. 신설)

제49조(직원) ①연합회의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50조 (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0. 3. 26. 개정)

제51조 (해산 및 합병) 연합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결의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06. 3. 31. 개정)

제52조 (잔여재산의 귀속) 연합회의 해산 및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2007. 12. 6. 개정)

제11장 상 별

제53조 (표창)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회장이 표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창을 하거나 관계기관이나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2010. 2. 24. 개정)

제54조 (벌칙) ①연합회의 임원 및 이사, 대의원 또는 직원 중 연합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연합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55조 (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56조 (운영규정) 정관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정관시행세칙 및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004. 2. 24. 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임원) 연합회의 설립 당시의 임원은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3조 (경과조치) 연합회의 설립 이전에 준비위원회에서 집행한 사무는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